

청에 대한 규정도 종전의 농지세의 규정과 같다.

○ 과세표준 - 법제204조, 영제152조·제153조, 규칙제84조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중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공제액 및 비과세·감면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다른 점은 없으나, 개정전 지방세법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1개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세에서의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등급결정, 열람 및 심사청구 등은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같으나, 필요경비의 종류와 그 적용에 있어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적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종전의 '시설비'를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로 개정하였다. 작물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할 시설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수, 차나무 등의 경우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둘째, '농기계유지관리비'를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로 개정하였다.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재배시설의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용역비'를 '차입금이자'로 개정하였다. 차입금이자란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를 말하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으로 불산입되는 이자는 제외한다.

넷째, '작물재배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및 훈련비'를 필요경비에 추가하였다.

다섯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였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